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(공항 입국자용)

<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, '21.10.13.(수)>

□ 유증상자

구분		진단검사		검사결과		조치사항
유증상자	⇨	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(검역소 격리시설)	⇨	양성	⇨	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
			⇨	음성	⇨	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(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)

□ 무증상자

○ 일반 국가 發 입국자

구 분			PCR 음성확인서	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	격리	추가 검사
증빙 가능한* 국내 예방접종완료자[1] * 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			⇨ 제출	⇨ 보건소	⇨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(수동감시)	⇨ 6~7일째 진단검사 실시
증빙 가능한* 해외 예방접종완료자[2] * 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			⇨ 제출	⇨ 보건소	⇨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(수동감시)	⇨ 6~7일째 진단검사 실시
미 접종자	⇨	내국인/ 장기체류외국인	⇨ 제출	⇨ 보건소	⇨ 자가격리	⇨ 격리해제전 검사
	⇨	단기체류외국인	⇨ 제출	⇨ 임시생활시설 검사 및 14일간 시설격리 (14日 입소비용 본인부담)		⇨ 격리해제전 검사

1)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완료자로, COOV(쿠브)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정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

2)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완료자로, COOV(쿠브)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정종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(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)

*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,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이력 등록 가능하며 등록절차 등 세부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

※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nip.kdac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출력 가능하며,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

※ 1), 2) 대상자는 거주지(숙소)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

○ 고위험국가 發 입국자

구분	예방접종 증명서	PCR 음성확인서	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	격리	추가 검사
남아공/ 미얀마/ 칠레/페루 發	제출여부 관계없음	제출	임시생활시설	시설격리 7일 + 자가격리 7일	시설퇴소 전 검사 격리해제전 검사 실시(총 2회)
탄자니아 發	제출	제출	보건소	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(수동감시)	6~7일째 진단검사 실시
	미제출	제출	임시생활시설	시설격리 7일 + 자가격리 7일	시설퇴소 전 검사 격리해제전 검사 실시(총 2회)
인도/ 남아공탄자니아외 아프리카 發	제출	제출	보건소	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(수동감시)	6~7일째 진단검사 실시
	미제출 ※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입국자도 해당 절차 적용	제출	임시생활시설	음성확인 후 자가격리	격리해제전 검사
브라질 發	제출여부 관계없음	제출	임시생활시설	음성확인 후 자가격리	격리해제전 검사
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* 상기 국가 외	제출여부 관계없음	제출	보건소	자가격리	격리해제전 검사

※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(부적합 포함)한 내·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

* 단, 입국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, 내국인은 시설격리 7일(비용 자부담),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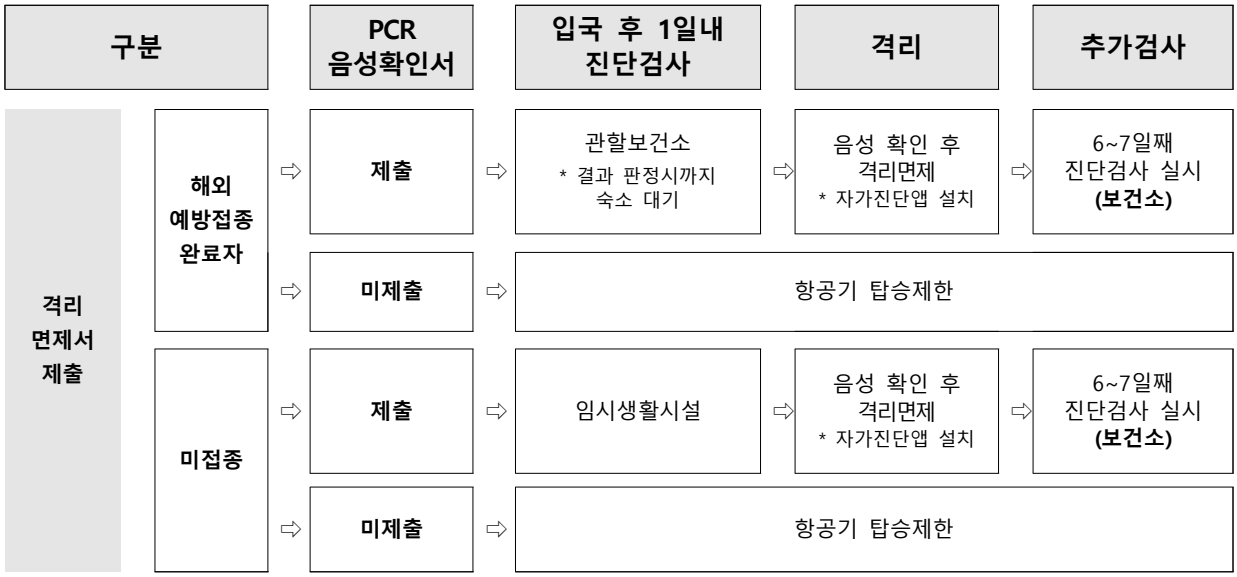
※ 단기체류외국인은 '일반 국가 發 입국자' 절차에 따름

※ 국가 및 조치사항은 발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, 변동 사항은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 게시

○ 격리면제자

☞ 세부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「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」에 따름

※ A1(외교)·A2(공무)·A3(협정) 비자소지자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(또는 관계부처)에서 '격리면제서'를 사전발급 받은 경우 등



※ 격리면제서 소지자 중 인도적 목적(장례식 참석)과 공무출장 후 입국하는 내국인은 'PCR음성확인서' 제출 대상에서 예외함(미얀마 發 내국인도 예외 적용)

※ A1(외교)·A2(공무)·A3(협정) 비자소지자 등 '격리면제서' 발급이 불요한 격리면제자 대응 절차는 Ⅲ.공항 검역대응 절차 → 4. 무증상자 검역조사·조치 → 다. 격리면제 대상자 → A비자 소지자 참고(입국후 6~7일차 검사는 불요함)

※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, 인도적 목적(직계가족 방문)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 있는 한국대사관으로 방법 및 절차 등 문의(유선문의 또는 각국 대사관 누리집 참고)